

의안번호	2208814
의 퇴 인	정성호 의원
회 답 일	2025. 3. 14.
추계번호	25F144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조세지출결산서 작성 및 온실가스감축에 관한 내용 포함 의무화

【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42조의3(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)	조세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을 기능별·세목별로 분석한 “조세지출결산서”를 작성하도록 함
2	안 제142조의4(온실가스감축인지 조세지출)	조세지출예산서 및 조세지출결산서에 온실가스감축인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42조의3(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)	제1호: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
2	안 제142조의4(온실가스감축인지 조세지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(1) 조세지출결산서 작성 의무화(안 제142조의3)

□ 개정안에 따라 조세지출결산서 작성을 의무화할 경우 조세지출결산서 추가 발행에 따른 인쇄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연평균 10억원 미만으로 예상

-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국가결산보고서(부속서류 포함 총 137종¹⁾)의 제작 인쇄비 세부내역을 토대로 추계한 부속서류 1종당 인쇄비는 약 230만원임
 - － 2025년 예산 기준,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137종에 대한 인쇄비 예산은 총 313,155,500원으로 결산보고서 1종당 인쇄비는 2,285,807원임
- 개정안에 따라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을 의무화하여 이를 결산서류로 제출하도록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230만원 등 추계기간 동안 총 1,100만원으로 추계됨
 - － 개정안 부칙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규정함에 따라 2028년부터 2027회계연도 조세지출 결산서가 제출될 것으로 전제함
 - － 개정안 시행까지 국가결산보고서 제작·인쇄비 변동 등의 변수는 고려하지 않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8	2029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(안 제142조의3)	2.3	2.3	2.3	2.3	2.3	11.5	2.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가 연평균 10억원 미만(연평균 230만원) 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 제1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1) 국가결산보고서 인쇄 세부내역에 따르면 국가결산보고서는 총 16종이며 종별 권수를 적용하면 총 137권임 (기획재정부,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(Ⅱ-1): 일반회계·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, 2025, p.383)

(2) 조세지출예산서 및 결산서에 온실가스감축인지에 관한 사항 포함(안 제142조의4)

- 개정안은 조세지출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내용을 조세지출예산서에, 직전 연도의 조세지출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조세지출결산서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
- 조세지출예산서 및 조세지출결산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의 온실가스 증감에 미칠 예상효과와 결과를 분석·평가하여야 하므로, 필요시 인력의 증원 또는 연구용역의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 - 개정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조세지출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,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온실가스감축인지 조세지출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 등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
 - 인력 증원을 통해 기획재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세지출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영향 등을 분석·평가할지, 외부기관의 용역 등을 통해 수행할 것인지 현재로서는 합리적으로 추론하기 어려움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지출예산서 및 결산서에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 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장설희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836	shjang@assembly.go.kr